

자동차 보험의 유형별 보상사례

- 승객, 탑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

손 병 돈 <한국 자동차 보험(주) 부장>

자동차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단 책임을 인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있어서, 오히려 배상액의 산정이 가·피해자간의 실질적인 관심사이다.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며,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배상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나, 그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피해자간에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평한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보험실무상으로는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판실무상으로도 사고유형에 따라 그 비율이 일정하게 되도록 정형화를 시도하고 있어 과실비율에 관하여 주관적인 판단에서 발생하는 불공평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같은 유형의 사고는 한 건도 없으며,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쪽도 자기의 잘못이 없거나 적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은 매우 어렵다.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뜻.

과실상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과실」과 대비하여 그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이질적인 것인가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로교통법 등 법규정에 위반된 것. 즉 의무위반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협동정신에 위배되는 「단순한 부주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대법원판결에서도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이나 행정책임을 째지는 경찰서의 사고조사의 내용에서는 법규위반 사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도 재판실무상으로나 보험실무상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2.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

현행 민법 제 36 조에서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경위에 관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이른바 형사기록 (사고발생경위등에 관한 경찰, 검찰의 기록이나 형사판결 등)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험실무상으로도 보험회사에서 경찰의 사고기록을 열람하여, 그 기록에 나타난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의 정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비율을 정하는 요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한 도로교통법 규에 의하여서만 그 비율이 정하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정에 관하여 모든 증거자료를 법원이나 보험회사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 재판 실무상으로도 일심과 이심에서 그 주장여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보험실무상으로도 사고당시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주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는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과실상계의 유형별 사례

그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어 상계되는지에 대하여 유형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며, 지면관계상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이나 탑승자에 관한 사례를, 다음 호에는 자동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시에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운전사와 함께 술을 마신 승객의 경우.

〈사례 I〉 영업용택시의 운전사가 1973. 6. 1.

23 : 00 경 ○○시 소재 ○○우 체국앞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 4명을 태우고 ○○시 ○동 소재 ○○○호텔로 가 그 호텔의 나이 트클럽에서. 그 다음 날 새벽 04 : 00경까지 승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시 위 승객들을 태우고 ○○시로 돌아가던 중, 음주 한 기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시속 80 Km 내지 100 Km의 속으로 음주하다가 로터리의 충돌을 충격, 차체가 두번 구르며 전복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사망한 피해자는 자기들을 태우고 갈 택시 운전사에게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함으로써 그의 주의력, 판단력 등을 흐리게 하고서, 그 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운전사가 운전한 택시에 승차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30% 인정하였다. (대법원 81. 8. 25 선고, 80다 2819 판결 참조)

〈사례 II〉 운전사가 음주한 90cc



오토바이의 뒷 좌석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져 뒷 탑승자가 부상한 경우. (뒤탑승자는 음주하지 않았음)

이 경우에는 술을 먹고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을 삼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탑승한 과실을 인정, 25% 과실상계하였다. (서울고법 81. 3. 5 선고, 80나 3088 판결 참조)

나. 승차정원에 위반하여 승차한 탑승자의 경우.

서울 ○가 ○○○○호 로얄승용차와 서울 ○바 ○○○○호 개인택시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양APT 앞 강변도로상에서 충돌하여,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부상하였는데, 사고 당시 개인택시에는 성인 4명, 유아 2명이 타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정원은 그자동차의 안

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고 당시 개인택시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승차함으로써 운전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과실을 인정, 15% 과실상계를 하였다. (서울고법

80. 7. 2 선고, 80나 780 판결 참조)

다. 화물트럭에 탑승한 화주의 경우.

화물차의 조수석에 화주가 탑승하고, 새벽까지 목적지에 화물을 도착시키기 위하여 장거리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운전사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화주가 시간에 쫓겨서 운전사의 요청을 묵살한 채 운행하다가, 운전사의 줄음운전으로 전방에서 수리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여 화주가 부상한 경우.

이 경우에는 화주로서는 무리한 장거리운행을 할 경우에는 운전사의 줄음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간간히 정차시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함은 물론, 운전중에도 운전사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화주의 과실을 10% 인정하였다. (서울고법 81. 7. 8 선고, 80나 4124 판결 참조) ◎